

“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”에 대한 검토의견

□ 검토의견

○ 법령적합성

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상 적합하다고 생각됨

○ 내용적 타당성

- 동 조례안은 파주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·외국인 또는 파주시를 방문한 외국 귀빈에게 수여하는 파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- 명예 시민증서 수여에 있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 의회 의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의회에 명예 시민증서 수여에 관하여 적절한 견제권을 확보하도록 함.
- 전체적으로, 동 조례안은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됨.